

연구 12-29

# 사법·행정·선거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 사법·행정·선거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2012. 12

## 연구진

연구책임 : 최승철 (한국장애인개발원 권익증진연구부 부장)  
공동연구원 : 염형국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박은혜 (한국장애인개발원 권익증진연구부 연구원)

## 발 간 사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의 차별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규정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제대로 해소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우리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의 차별 금지 영역별로 해당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차별은 무엇인지, 장애 차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절의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 매뉴얼은 경찰, 검찰, 법원 및 교정·구금시설 등 사법기관이 사법 절차에서 피해야 하는 장애 차별과,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행정 절차 및 서비스에서 피해야 하는 장애 차별, 그리고 선거 관련 기관들이 장애인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에서 피해야 하는 차별을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국민의 주요한 기본권을 다루기에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장애 차별을 포함한 모든 차별의 예방에 민감해야 하고, 또한 장애인들은 해당 기본권의 향유에 있어서 장애 때문에 차별이 발생할 때 적절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매뉴얼이 참정권 등 중요한 기본권에서의 장애인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실무자는 물론 장애인 여러분에게도 유용하게 쓰이길 기대합니다.

2012. 12. 31.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변 용 찬

본 매뉴얼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유권 해석은 아닙니다. 그 유권 해석의 권한은 관련 정부부처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러두기 : 이 보고서에서 사용된 법원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규칙 등의 문언은 이해하기 쉽게 일부 편집했습니다.





# 목 차

## 총 론

- 1.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 차별의 유형 및 그 구성요건 ..... 3
  - 1) 직접차별 ..... 3
  - 2) 간접차별 ..... 7
  - 3)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또는 미이행 ..... 8
  - 4)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 ..... 13
  - 5) 장애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을 방해하는 차별 ..... 14
  - 6) 총론 지침 ..... 14
  
-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절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8
  - 1) 사법 절차 관련 법과의 관계 ..... 18
  - 2) 선거 관련 법과의 관계 ..... 19

## 사법 · 행정 · 선거 세부영역별 장애 차별 지침

3. 사법 절차 .....	25
1) 경찰 및 검찰 .....	25
2) 교정·구금시설 .....	32
3) 법원 .....	35
4. 행정 절차 및 서비스 .....	40
1) 공문서 신청, 발급 및 열람 등 민원 처리 .....	40
2)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접근성 제공 .....	45
5. 선거 .....	48
1) 투표 사전 절차 (선거정보 접근, 선거인명부 열람 등) .....	48
2) 투표소 접근 및 이용 .....	52
3) 후보 등록, 선거운동 등 피선거권 .....	56



# I

## 부 록



## 1.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 차별의 유형 및 그 구성 요건

### 1) 직접차별

1.1.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 이는 어떤 개인이 특정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비장애인이거나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달리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개인에게 공문서를 발급해주기를 거부하거나 사업 인가를 내주지 않거나, 사법기관이 해당 개인에 대한 조사나 심리를 함부로 하거나, 선거기관이 해당 개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지 않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의 특성을 이유로 이들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직접차별이라 한다.

1.1.2 ‘장애를 사유로’ 불리한 대우를 했다는 것은 장애 때문에 불리한 대우를 했다는 것으로, 이는 장애가 아니었다라면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았을 것을, 즉 해당 장애가 없는 개인에게는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았을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장애인에게 장애가 아닌 사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장애 차별이 아니다.<sup>1)</sup>

1)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가 아닌 사유와 장애라는 사유가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불리한 대우의 사유가 복수인 경우, 이를 ‘복합동기’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어떤 관리자가 장애인 직원의 근무태만과 ‘장애인은 조직 장악력이 없다’라는 개인적 편견 때문에 그 직원의 승진을 거부했다면, 이는 근무태만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는 두 개의 복합동기에 의한 승진 거부(불리한 대우)다. 이때 근무태만이라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에 해당한다. 복합동기에 의한 장애 차별에 대한 국내 법원판례는 아직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근무태만)만으로도 모든 다른 경우에도 불리한 대우를 할 것(근무태만한 모든 직원들의 승진을 거부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부당한 사유(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의한 차별을 일정 정도 면책(원고의 변호사 비용 납부)한다는 판례가 구축되어 있다.

어떤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투표하러 온 지적장애인의 말과 행동을 보고 당해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제대로 투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했다. 이것은 장애를 이유로 해당 장애인에게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불리한 대우를 한 것이다. 달리 말해서 투표관리관은 투표하러 온 개인의 지적장애가 아니었더라면 그 개인에게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기 예에서 투표관리관이 지적장애인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는 장애를 사유로 투표를 제지한 것이 아니라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사유로 투표를 제지한 것이다. 투표관리관은 어떤 투표자가 투표장에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경우, 그 투표자의 지적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개인이 투표하는 것을 제지했을 것이다.

1.1.3 기본적으로 차별은 비교대상이 있어야 성립하지만 그 비교대상을 반드시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 어떤 개인이 특정 장애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그러한 장애가 없는 다른 개인에게는 해당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비교대상을 전제하는 것이다.

상기의 예에서 투표관리관이 해당 개인의 지적장애가 아니었더라면 그 개인에게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지적장애가 아닌 다른 개인에게는 지적장애가 없기에 그러한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았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때 이 다른 개인들이 당해 불리한 대우의 비교대상이 된다. 이 비교대상은 특정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특정될 수 있는 비교대상은 당해 지적장애인에 앞서 또는 그 뒤에 투표를 한 다른 선거인(들)이 된다.

1.1.4 장애 차별의 성립 요건으로서 장애인의 비교대상은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도 포함한다. 특정 유형의 장애를 사유로 불리한 대우를 할 경우, 다른 유형의 장애인이 그 비교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특정) 장애를 사유로 한 불리한 대우에 해당한다.

지방의회가 정신장애가 있는 개인은 지방의회의 회의를 방청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어떤 정신장애인의 회의 방청 신청을 거부했다. 이러한 행위는, 정신장애가 아닌 다른 유형의 장애인의 방청을 허용했다고 해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닌 것은 아니다. 정신장애인은 비장애인은 물론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서도 방청 금지라는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것이다. 그는 정신장애가 아니었다라면 그러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참고로, 이 불리한 대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는 차별이다. 지방의회는 그 불리한 대우에 대한 사유로 '정신장애인은 방청 중에 회의 진행과 다른 방청인의 방청을 방해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들었다. 이 사유가 정당하려면, '정신장애인이라면 모두 회의 진행을 방해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 사실이어야 한다. 이것이 사실인 경우에만 지방의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 및 방청을 위해 정신장애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당해 불리한 대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따라서 이는 차별이다.

## 불리한 대우

1.1.5 불리한 대우란 장애인이 어떤 정당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장애인의 유형·무형의 이해관계 및 기본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장애인에게 특정한 행정 또는 사법 절차를 밟지 못하게 해당 절차에서 배제하거나, 그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것을 제한하는 것, 장애인에게 특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거부하거나, 질 낮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한하는 것, 장애인에 대해 사업 인가를 내주기를 거부하는 것, 장애인에게 투표를 하지 못하게 투표에서 배제하는 것, 구급 시설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 등은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리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다.

1.1.6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장애인에게 더 낮은 수준의 행정 또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를 사유로 한 불리한 대우에 해당한다.

구청 민원실 창구 직원이 지적장애인 민원인의 이해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다른 민원인과 달리 해당 민원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사유로 한 불리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다.

1.1.7 공공기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장애인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행정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불리한 대우에 해당한다. 불리한 조건에는 행정 서비스나 절차와 관련해서 장애인에게 더 많이 요금을 물리거나 추가적인 조건을 다는 것이 포함된다. 단,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추가 서류 제출 등 추가적인 조건을 다는 것은 불리한 대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어느 공공기관이 장애인 기업이 공공사업 수주에 응하자 이 기업의 수주 능력을 의심하여 다른 응모 기업과는 달리 제안서 상의 과거 수주 경험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추가 서류 제출 요구는 불리한 대우에 해당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차별의 소지가 크다.

## 정당한 사유

1.1.8 장애를 사유로 한 불리한 대우라 하더라도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이 아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장애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공공기관 등에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sup>2)</sup>을 발생시키거나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이 해당 서비스나 절차 등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sup>3)</sup> 등이 있다.

2) 이 사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나오는 것으로, 주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데 대한 사유로 사용된다.

3) 이 사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 나오는 것으로, 동 조항은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크게 두 가지의 차별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의 전단부는 소위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후단부는 '고용 영역에서의 진정직업자격과 같은 것이 서비스 영역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서비스 영역에 적용되는 것은 소위 '진정서비스자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해당 서비스를, 또는 해당 서비스 사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 또는 운영하는 데 문제의 불리한 대우가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에 대해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만 정신장애를 가진 모든 입주자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 임대 계약을 맺은 후 그 단기 입주 기간 동안 정신장애인 입주자가 장애로 인해 임대료를 체납하거나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다시 장기 임대 계약을 맺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정신장애인에 대해 다른 사람과 달리 처음부터 장기 임대 계약을 맺지 않는 것은 장애를 사유로 한 불리한 대우인데, 이 불리한 대우에 대한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이는 차별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장애인은 임대료를 체납하거나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그 사유로 들었다. 이 사유가 정당하려면 정신장애인이라면 모두 정신장애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임대료를 내지 않는 등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큰 것이 사실이어야 한다. 이것이 사실인 경우에만 원활한 공공아파트 임대 서비스를 위해 정신장애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상기의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당해 불리한 대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차별이다.

## 2) 간접차별

1.2.1 간접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공사업 수혜자를 선정함에 있어 형식상으로는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선정 탈락과 같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 기준의 적용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이때 문제의 기준은 그것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고려한다면 사전에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 수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업체의 장이 선정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는 경우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을 배점기준에 포함시켰다. 이 배점기준은 형식상으로는 장애인 업체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아닌, 장애 중립적인 기준이다. 한편, 특정 업체의 장은 청각장애인이어서 제안서 발표를 직원에게 맡겼고 이 때문에 당해 장애인 업체는 낮은 점수를 받는 불리한 결과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배점기준은 형식상으로는 장애인 업체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공공사업 수혜 업체의 선정에 적용함으로써 비장애인 업체에 비해 장애인 업체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기준의 적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적용은 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 불리한 결과를 야기한 기준에 대한 정당한 사유

1.2.2 비록 어떤 장애 중립적인 기준의 적용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했다더라도 그 기준을 적용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는 간접차별이 아니다. 예를 들면, 공공사업 수혜자를 선정함에 있어 형식상으로 장애 중립적이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선정 탈락과 같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더라도, 그러한 기준의 적용이 해당 공공사업을 가장 잘 수행할 적격 업체를 선정하는 데 불가피하다면 해당 기준의 적용은 간접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기 사례에서 업체의 장이 직접 사업 제안서를 발표하는 것에 높은 배점을 준 것은 해당 사업을 책임질 업주가 사업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 공공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업체의 장이 직접 사업 제안서를 발표하는 것이 업체의 공공사업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즉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당해 기준의 적용은 공공사업 수혜자 선정이라는 행정 절차의 성질상 불가피한 것이 아닌바,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

### 3)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또는 미이행

1.3.1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시설·설비·도구·서비스를 새로 또는 변경하여 제공하거나, 정책·절차·관행 등을 새로 또는 변경하여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건관계인의 진술 등의 의사소통은 재판이 성립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 또는 기능으로, 만약 사건관계인의 장애로 인해 그러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는 법원 측에 대해 수화통역사 제공과 같은 편의제공 의무를 촉발한다. 그렇지만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사건관계인이 방청석의 친지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재판 과정과는 무관한, 순전히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인바, 이는 법원 측에 편의제공 의무를 촉발하지 않는다.

## 물리적 장애물의 제거에 대한 불가피한 대안으로서의 인적 편의

1.3.4 정당한 인적 편의는 시설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또는 시설물 내에서의 장애인의 이동성을 저해하는 해당 시설물의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에 해당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공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대안적인 인적 편의는 종종 해당 편의 인력이 장애인의 신체 또는 장애인의 이동기구를 밀거나, 들어 나르거나 또는 당기는 등 장애인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물리적 힘을 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에 장애인의 안전과 존엄성 보장이 중요한바,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장애인의 존엄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인적 편의는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지 않을 소지가 크다.

지방선거관리위원회가 현관 입구에 2개의 계단이 있는 학교 건물을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로 지정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 유권자가 그 계단 때문에 투표장에 진입할 수 없자 당일 투표소 관리 요원으로 파견된 동사무소 직원들이 장애인을 휠체어에 태운 채로 손으로 들어서 문제의 계단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당한 인적 편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단 계단의 물리적 장애물이 간이 경사로 설치라는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는바, 따라서 문제의 인적 편의는 불가피한 대안이 아니므로 정당한 편의로 보기 어렵다. 또한 동사무소 직원들이 장애인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덜 굴욕적인 방식으로 들어 나르는 훈련을 사전에 받지 않고 그 일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장애인의 안전과 존엄성을 보장하지 못하였으므로 당해 인적 편의는 정당한 편의가 아닐 소지가 크다.<sup>5)</sup> 참고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한 편의 미제공으로 인한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권을 보장하는 시설이나 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면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권이 보장되는 시설을 투표소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5) 미국에서 장애인을 직접 들어 나르는 것이 용인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첫째,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물리적 측면의 변경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들어 나르는 것이 일시적인 방편으로 사용되는 경우, 둘째, 들어 나르는 사람들이 가장

## 정당한 편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의 절차

1.3.5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사전에 또는 현장에서 장애인이 편의를 요청할 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비공식적인 상호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장애인의 요구가 없으면 편의제공을 위해 비공식적 상호 협의를 시작해야 할 의무,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한편 비공식적 상호 협의의 과정에서 효과적인 편의가 여러 개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 편의 제공자는 장애인의 선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그 최종 선택권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편의 제공자에게 있다.

1.3.6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자신이 생산·배포한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해 장애인이 접근하는 데 필요한 각종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그 수단은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이다. 이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중앙 정부부처가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는 안내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했다. 시각장애인이 이 소책자에 실린 정책의 내용을 알 수 없어서 그 내용을 점자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정부부처는 그 내용을 점자화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에 해당한다거나 점자화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야기하는 경우, 예를 들면 소책자의 내용이 주로 표와 그림으로 이루어져서 점자화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애인이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책자의 내용을 점자화하여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상기 예에서 소책자의 내용이 주로 표와 그림으로 이루어져서 이를 점자화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장애인과 협의하여 점자화 대신에 해당 표와 그림을 음성으로 설명하고 이를 녹음테이프에 담아 제공하는 등의 대안적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안전하고 가장 덜 굴욕적인 방식으로 들어 나르는 것을 공식적으로 훈련을 받았고 들어 나르는 서비스가 신뢰할만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경우. U.S. Department of Justic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Title II Technical Assistance Manual Covering State and Local Government Programs and Services Accommodation and Commercial Facilities, II-5.2000 Methods for providing program accessibility.

1.3.7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장애인이 행사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하거나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참여하거나 그 내용에 접근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 음성통역, 보청기기, 점자자료, 녹음테이프, 자막 서비스 등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이때 장애인이 행사 개최를 인지하고 행사의 내용에 대해 문의하면서 필요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행사 개최를 공지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이를 공지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토론회 개최 결정을 너무 늦게 내리는 바람에 개최 4일 전에야 이를 공지했다. 이 토론회에 관심이 있는 시각장애인이 개최 2일 전에 공공기관에 토론회 자료 책자를 점자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이 개최 일까지 점자 책자를 만들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행사 개최 공고를 사전 공지해야 한다.

1.3.8 특정 정당한 편의가 그 제공자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 상의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야기할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은 비용이 좀 든다거나 귀찮다거나 불편하다는 정도의 부담이나 곤란이 아니라 지나치거나, 부적절하거나, 비례적이지 못한 부담이나 곤란을 의미하며, 극단적인 부담이나 곤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과도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많은 비용을 요하거나, 편의 제공자의 사업이나 다른 참여자들의 관련 활동을 상당히 훼손하거나, 편의 제공자의 사업의 성격이나 운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등의 경우다. 한편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례별로 모든 관련 요소들, 예를 들면 편의 비용의 크기, 편의 제공자의 재정 및 조직 규모, 편의 제공자의 사업 성격에 대한 영향, 다른 참여자에 대한 영향, 편의 제공자의 편의 확보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어느 군청은 민원실을 방문한 청각장애인 민원인에게 복잡한 의사소통을 요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상황이었어서 수화통역 또는 화상전화기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그 제공을 거부했다. 예산 부족이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즉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되려면 해당 기관이 해당 편의를 제공해야 할 상황을 예견해서 사전에 예산 배정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를 신청하는 등 해당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편의 제공의 경우 해당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사전에 해당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장애인이 해당 편의를 요청할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해당 편의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장애인이 이를 요청하자 예산이 많이 든 다는 이유로, 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 4)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

1.4.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보호자, 후견인, 활동보조인 등처럼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보조하는 개인을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이들에게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나 이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여 이들의 대리 또는 보조 등의 활동을 훼손하거나, 또는 이들의 활동을 정당한 편의 차원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차별이다.

어느 공공기관이 자신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입장권을 소지한 개인만 행사장에 입장시키는 내부 규칙을 갖고 있다. 한 장애인은 행사장 안에서도 활동보조인의 보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가 있지만 공공기관 측은 입장권이 있는 장애인만 행사장 입장을 허용하고 입장권이 없는 활동보조인에게는 입장을 불허했다. 만약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공공기관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다면 문제의 내부 규칙을 변경하여 활동보조인의 입장을 허용하는 것은 정당한 편의에 해당할 수 있다.

## 5) 장애 보조조건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을 방해하는 차별

1.5.1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장애인이 장애보조조건이나 장애인보조기구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차별에 해당한다.

법원 경비가 시각장애인 방청인이 장애보조조건과 함께 법정에서 들어오면 엄숙한 법정 분위기를 해치거나 보조조건이 재판 진행을 방해할 소지가 있다는 막연한 판단 하에 장애보조조건을 법정 밖에 묶어두고 시각장애인만 법정에서 입장할 것을 강요했다면 이는 장애보조조건을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 6) 총론 지침

- ① ‘장애를 사유로’ 불리한 대우를 했다는 것은 장애 때문에 불리한 대우를 했다는 것으로, 이는 장애가 아니었다면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았을 것을, 즉 문제된 장애가 없는 개인에게는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았을 것을 의미한다.
- ② 장애 차별의 성립 요건으로서 장애인의 비교대상은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도 포함한다. 특정 유형의 장애를 사유로 불리한 대우를 할 경우, 다른 유형의 장애인이 그 비교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공공기관 등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장애인에게 더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를 사유로 한 불리한 대우다.
- ④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보다 나쁜 조건으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리한 대우에 해당한다. 나쁜 조건에는 서비스에 대해 추가적인 조건을 다는 것도 포함된다.



- ⑤ 장애를 사유로 한 불리한 대우라 하더라도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이 아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장애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공공기관 등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을 발생시키거나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이 해당 서비스나 절차 등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이 있다.
- ⑥ 공공사업 수혜자를 선정함에 있어 형식상으로는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선정 탈락과 같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그 기준의 적용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 ⑦ 공공사업 수혜자를 선정함에 있어 형식상으로 장애 중립적이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선정 탈락과 같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더라도, 그러한 기준의 적용이 해당 공공사업을 가장 잘 수행할 적격 업체를 선정하는 데 불가피하다면 해당 기준의 적용은 간접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⑧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시설·설비·도구·서비스를 새로 또는 변경하여 제공하거나, 정책 등을 새로 또는 변경하여 적용하는 등의 인적·물적·비물리적 제반 수단과 조치다.
- ⑨ 정당한 편의가 동등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동등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지 그들 모두에게 해당 활동을 똑같은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은 아니다.
- ⑩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해당 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최상의 편의일 필요는 없다.

- ⑪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활동’은 그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된,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영역 안에서 그 영역의 목적 또는 기능과 직접 관련해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그러한 관련성이 없는 활동, 예를 들면 순전히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 대해서는 편의제공 의무가 촉발되지 않는다.
- ⑫ 정당한 인적 편의 중 일부는 시설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또는 시설물 내에서의 장애인의 이동성을 저해하는 해당 시설물의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에 해당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공될 수 있다.
- ⑬ 공공기관 등은 사전에 또는 현장에서 장애인이 편의를 요청할 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비공식적인 상호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장애인의 요구가 없으면 편의제공을 위해 비공식적 상호 협의를 시작해야 할 의무,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 ⑭ 편의 제공을 위한 협의의 과정에서 효과적인 편의가 여러 개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 편의 제공자는 장애인의 선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그 최종 선택권은 편의 제공자에게 있다.
- ⑮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생산·배포한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해 장애인이 접근하는 데 필요한 수화통역사, 점자자료 등 각종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이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 ⑯ 특정 정당한 편의가 그 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야기할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은 비용이 좀 든다거나 귀찮다거나 불편하다는 정도의 부담이나 곤란이 아니라 지나치거나, 부적절하거나, 비례적이지 못한 부담이나 곤란을 의미하며, 극단적인 부담이나 곤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⑰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의 보호자, 후견인, 활동보조인 등처럼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보조하는 개인을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이들에게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나 이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여 이들의 대리 또는 보조 등의 활동을 훼손하거나, 또는 이들의 활동을 정당한 편의 차원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차별이다.

##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절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사법 절차 관련 법과의 관계

2.1.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서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형사소송법」 조항은 ‘신뢰관계에 있는 자와의 동석’만을 규정하고 있어 하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신문받는 경우에 그것만이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인 것으로 축소 해석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축소 해석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정당한 편의 개념과 상충된다.

2.1.2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장애인인 피의자를 수사함에 있어 보호자 등의 동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장애인인 피의자가 보호자 등의 조력을 받기 원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수사기관에 재량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과 상충되는 해석이다.



2.1.3 장애인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임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에서는 피고인이 농아자이거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만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임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 유형의 장애인 피고인은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음을 소명하여 청구할 때에만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형의 장애인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2.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및 제37조에서는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사 및 재판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의 형사사법 절차상의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으로, 성폭력 피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다른 사건관계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2) 선거 관련 법과의 관계

### 선거권 관련

2.2.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장애인의 선거권을 포함하여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 배치 등을 정당한 편의 차원에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7조 제3항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도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공직선거법」도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또는 후보자 연설 방송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고(제70조 제6항, 제72조 제2항 등), 투표 당일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제151조 제7항). 다만,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그리고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등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해 폐쇄자막 및 수화통역을 제공하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강제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일부 상충될 소지가 있다.

2.2.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3항은 “공직 선거의 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제공할 때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한다.

2.2.3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2항의 투표 보조원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에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은 투표 보조인력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투표소에서 장애인의 이동이나 안내를 돕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 투표소 보조원 또는 보조인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

2.2.4 「공직선거법」은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

하거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러한 교통편의 제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

2.2.5 「공직선거법」은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만 규정하고 있을 뿐 투표사무원이나 참관인의 의무적 배치와 같은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장애인생활시설의 시설장이나 보조교사 등 시설 종사자가 투표를 관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 결과 대리투표나 투표의 비밀성의 훼손과 같은 장애인의 선거권을 훼손하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거소투표가 이루어지는 시설은 모두 장애인 시설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시설에 설치되는 기표소에 다른 투표소에 배치되는 관련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장애인의 선거권 훼손과 같은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일 소지가 있다.





# II

## 사법 · 행정 · 선거 세부영역별 장애 차별 지침





### 3. 사법 절차

#### 1) 경찰 및 검찰

##### 직접차별

3.1.1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의자 또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불리한 대우에는 장애인 피의자, 피해자 등에게 반말을 하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집시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장애인 피의자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다른 피의자와는 달리 장애인 피의자에 대하여 반말을 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에 해당한다.

3.1.2 수사기관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는 장애인 피의자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사후에라도 이러한 고지사항에 대하여 당사자뿐 아니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sup>6)</sup>

6)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3조

경찰이 지적장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지적장애가 있어서 미란다원칙을 알려주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체포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도록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자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 정당한 편의 제공

3.1.3 수사기관은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때 수사기관은 장애가 있는 사건관계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1.4 수사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편의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편의를 제공할 때 유형과 정도에 따른 장애의 다양성이 존재함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법규정을 해석하거나 이를 실제 실무에서 제공함에 있어 이러한 장애의 다양성에 따른 편의제공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편의가 제공되더라도 전혀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sup>7)</sup>

3.1.5 경찰은 장애인이 참여한 불법 집회를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강제 해산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참고로, 불법 집회의 물리력을 사용할 때 장애인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sup>8)</sup>

7) 차성안, 장애인의 사법(司法)서비스 접근권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법원을 중심으로 p.242

8)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7조



경찰이 장애인 집회에 참가한 전동휠체어 사용 중증장애인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전동휠체어를 장애인과 분리하고 한참 후에야 이를 본인에게 돌려주었다. 중증장애인은 전동휠체어나 다른 이의 도움이 없이는 신체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전동휠체어는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점, 전동휠체어가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신체활동 불가로 인해 전동휠체어와 분리되는 경우 심리적·정신적 불안감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동휠체어와 분리되는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예기치 않게 생명이 위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장애인을 전동휠체어와 분리시키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분리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를 요하며 그 분리시간은 최단시간이어야 한다.<sup>9)</sup>

3.1.6 수사기관은 과속·음주 단속 시, 체포에 따른 미란다원칙 고지 시, 기타 예고되지 않은 조사 시, 수화통역사 등 전문적인 의사소통 보조인을 제공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서는 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피의자에게 인쇄물, 점자화된 인쇄물, 필담, 통신중계서비스 등 대체적인 의사소통 보조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피의자가 차후 조사에서 비용 부담 없이 의사소통을 보조할 전문적 인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

3.1.7 경찰관은 장애인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 전에 장애인 본인 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장애 유무 및 등급 등을 미리 확인하고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실시하여야 한다.<sup>10)</sup> 경찰관이 정신적 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조사할 때에는 의사소통을 도울 보조인을 참여시켜야 하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여러 명의 장애인들이 한 사건에 관련되어 있고 이들에게 의사소통 보조인이 필요할 경우 각 이해당사자별 1인 이상의 보조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장애인 피해자가 동성(同姓) 통역사의 참여를 원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sup>11)</sup>

9) 국가인권위원회 06진인1851 등 병합사건, 2006. 12. 6. 침해구제 제1위원회 결정

10)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5조 제1항

11)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5조

장애인을 상대로 수사하는 경찰관은 장애인등록증, 외관, 의사소통의 정도에 근거하여 장애 유무 및 장애 정도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조사방법을 택할 때에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최대한 그에 부합된 조사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예컨대 청각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 그가 수화가 가능한지, 필담으로 대화를 하는지, 입모양을 보고 구화를 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그에 적합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해당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이 적절하지 않음에도 경찰관이 임의로 판단하여 이를 제공하는 것은 결코 정당한 편의제공이라 할 수 없다.

3.1.8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sup>12)</sup> 수사기관은 장애인을 조사할 때 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켜 조사하여야 한다. 검사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의 조사 참관을 허용하여야 한다.<sup>13)</sup>

3.1.9 장애인 피의자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하에 조사를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위와 같은 사람들의 동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장애인임을 인지한 피의자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보호자 등의 동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미리 고지하는 것은 동법 제26조 제6항 후단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2)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13)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7조



지적장애 2급인 김모씨는 2009년 5월 ‘촛불 1주년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여 경찰에게 박카스병을 던졌다는 사유로 체포되었다.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3회에 걸쳐 김모씨를 조사하면서 보호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여 조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이를 결여한 것은 수사절차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것이다. 참고로 경찰관은 예외적으로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다. 장애인인 피의자가 심야 조사를 받을 때 가족·친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조사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 경찰관은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sup>14)</sup>

3.1.10 수사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조사 전에 장애의 유무나 장애 정도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진술의 임의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에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한편, 장애인에 대한 수사절차상 보호자 등 신뢰관계자의 동석제도나 국선변호인제도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그 형식적 적용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적장애 2급 여성 조씨는 2007년 5월경 경기 수원역 인근 한 건물 계단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영아의 시신이 발견된 후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다. 경찰은 당시 절도범으로 수사를 받던 노숙인 홍모씨를 추궁해 조씨가 아이를 버렸다는 허위자백을 확보한 후 이를 근거로 조씨를 추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짓 시인을 받았다. 경찰은 긴급체포 당시 조씨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도 없이 무리하게 조사를 진행해 조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허위로 자백받았다. 경찰은 오염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조씨를 구속했다. 그러나 이후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영아와 조씨의 유전자가 불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15일만에 조씨를 석방했다. 비록 위 조사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의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원고의 수사절차상 권리를 침해한 채 경찰관에 의하여 오염된 증거를 토대로 허위자백을 유도하여 원고를 구속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수사절차상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sup>15)</sup>

14)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4조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09가단99509 판결

3.1.11 경찰관은 조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소인, 참고인, 피의자 등에 대하여 경찰관서간 전자식 영상장비를 이용한 화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장애인이 화상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sup>16)</sup>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중증지체장애인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하여야 하는 경우에 A씨는 거리가 멀고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직접 종로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기가 대단히 곤란하다. 이러한 경우에 A씨는 종로경찰서에 요청하여 본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안양경찰서에 가서 화상으로 조사를 받기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로경찰서는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3.1.12 수사기관 및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 및 증인신문을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수사기관 및 법원은 사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sup>17)</sup>

3.1.13 경찰관서의 장은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수사 또는 민원 사무실 위치·구조 및 편의시설,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사소통장비 등의 마련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sup>18)</sup> 경찰관서의 장은 여성 유치인의 정서적·생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치실 구조, 시설 등을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노약자·장애인 유치인을 위해 목발, 휠체어 등 필요한 기구 등을 비치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sup>19)</sup>

16)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6조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37조

18)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5조

19)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0조





## 경찰 및 검찰에서의 장애 차별 금지 지침

- ①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의자 또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불리한 대우에는 장애인 피의자, 피해자 등에게 반말을 하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 ②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는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피의자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사후에라도 이러한 고지사항에 대하여 당사자뿐 아니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수사기관은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며, 이들이 사법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수사기관은 과속·음주 단속 시, 체포에 따른 미란다원칙 고지 시, 기타 예고되지 않은 조사 시, 수화통역사 등 전문적인 의사소통 보조인을 제공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서는 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피의자에게 인쇄물, 점자화된 인쇄물, 필담, 통신중계서비스 등 대체적인 의사소통 보조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 ⑤ 장애인 피의자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하에 조사를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위와 같은 사람들의 동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장애인임을 인지한 피의자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보호자 등의 동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미리 고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

## 2) 교정·구금시설

### 직접차별

3.2.1 교정·구금시설은 수형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불리한 대우에는 장애인 수형자에게 반말을 하거나 운동을 시키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교도대원이 다른 수용자와는 달리 장애인 수용자에 대하여 반말을 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운동을 시키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에 해당한다.

3.2.2 어떤 개인이 중증지체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벌금을 대체하는 노역장 유치를 거부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 확대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 불법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 장애인은 선택에 따라 벌금을 낼 수 있고,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벌금을 대체하는 노역장 유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구금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이어서 받기가 곤란하다고 하여 상기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차별에 해당한다.

### 정당한 편의 제공

3.2.3 교정·구금시설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수용자가 시설 내의 직업훈련시설, 의료시설, 학과교육시설, 운동시설, 상담시설 등에 접근·이용하고자 할 때 필요할 경우 이동을 보조하는 인력을 제공해야 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수용자가 그러한 시설에서 교육, 의료, 상담서비스 등을 받을 때 필요할 경우 과도한 부담 등이 되지 않는 한 의사소통을 보조할 인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3.2.4 교정·구금시설은 정당한 편의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료 및 상담 서비스의 경우, 복잡하고 상호적인 의사소통을 요하고 그 소통 내용이 해당 수용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큰바, 수화통역사 등 전문적인 인적 편의가 필요할 수 있다.

3.2.5 교정·구금시설은 피의자를 유치할 때, 신체장애인 등을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고 신체장애에 맞는 적절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sup>20)</sup>

의족과 목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수용자는 비장애인에 비해 행동반경이 크다. 교정·구금시설이 이러한 장애인을 현재 4명 정원에 6명 이상이 수용되고 있는 혼거실에 수용하여 열악한 수용환경에 놓이게 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장애인 혼거실 수용정원 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sup>21)</sup>

3.2.6 교정·구금시설의 장은 장애인 수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교정·구금시설의 위치·구조 및 편의시설,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사소통장비 등의 마련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교정시설은 매개시설로서 주출입구 접근로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주출입구 높이 차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내부시설로서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를 설치하고, 위생시설로서 장애인 전용 화장실 대변기·소변기, 화장실 세면대의 설치, 안내시설로서 점자블록의 설치, 기타 접수대·작업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sup>22)</sup>

3.2.7 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청각·언어장애를 가진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화 통역사 연계 등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sup>23)</sup>

20)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

21) 국가인권위원회 08직인12 장애인 수용자 과밀수용에 의한 인권침해 등

22) 국가인권위원회 08직인12 장애인 수용자 과밀수용에 의한 인권침해 등

23)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

3.2.8 경찰관이 수갑·포승을 사용하는 경우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수갑 등을 채우지 아니한다.<sup>24)</sup>

### 교정·구금시설에서의 장애 차별 금지 지침

① 교정·구금시설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수용자가 시설 내의 직업훈련시설, 의료시설, 학과교육시설, 운동시설, 상담시설 등에 접근·이용하고자 할 때 필요할 경우 이동을 보조하는 인력을 제공해야 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수용자가 그러한 시설에서 교육, 의료, 상담서비스 등을 받을 때 필요할 경우 과도한 부담 등이 되지 않는 한 의사소통을 보조할 인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교정·구금시설은 정당한 편의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③ 교정·구금시설은 피의자를 유치할 때, 신체장애인 등을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고 신체장애에 맞는 적절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

24)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22조



### 3) 법원

#### 직접차별

3.3.1 법원은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원·피고 또는 피고인·증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불리한 대우에는 장애인 원·피고 또는 피고인·증인에게 반말을 하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판사가 폭행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언어장애를 가진 피고인에게 다른 피고인과는 달리 반말을 하고, 말을 똑바로 하라며 화를 내며,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에 해당한다.

3.3.2 법원이 법정에서 출석한 당사자가 언어장애인이어서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하며 서면제출로 대신하라고 하는 것은 언어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언어장애가 있는 당사자가 재판장에게 직접 진술을 하고자 함에도 재판장은 언어장애인의 진술을 들어보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로 말하고 싶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에 해당한다.

#### 정당한 편의 제공

3.3.3 법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3.4 피고인이 농아자인 경우나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sup>25)</sup>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임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하였다. 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sup>26)</sup>

3.3.5 형사재판에서 농아인의 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sup>27)</sup> 민사재판에서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sup>28)</sup> 재판절차에서의 의사소통은 매우 복잡하고 사건관계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재판에서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조할 수화통역사 등 통역인은 법률 지식에 친숙하여 법률적 의사소통을 정확하고 보조할 수 있어야 한다.

청각장애인 중 수화, 구화 등을 능숙하게 구사하는 자의 비중이 매우 낮은 점과 수화, 구화 외에도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이 사용됨을 고려하면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이 직접 발성을 하거나 수화 등을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한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속기사 등을 이용한 문자통역도 매우 유용한 의사소통 수단이다. 수화가 전문용어 등의 번역에 있어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 수화, 구화 등의 구사능력이 낮거나 아예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문자통역을 통한 의사소통이 유용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쌍방향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청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 등이 따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sup>29)</sup>

25) 「형사소송법」 제33조

26) 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881 판결

27) 「형사소송법」 제181조

28) 「민사소송법」 제143조

29) 차성안, 장애인의 사법(司法)서비스 접근권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법원을 중심으로 p.241



3.3.6 재판에서 전맹(全盲)인 사건관계인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제공할 때 이들이 서류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 전자파일,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사용을 위한 2차원 바코드 인쇄, 음성자료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때 주의할 점은 모든 전맹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구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시각장애를 가지게 된 시기가 늦을수록 점자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용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음성변환 등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sup>30)</sup>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맹률이 2008년을 기준으로 96.6%에 달하고, 점자해독이 가능한 장애인이 2.4%, 점자해독을 배우는 중인 장애인이 1.0%로서 둘 다 합하여도 전체 시각장애인의 4%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는 점자’라고 하는 도식적 이해의 틀을 벗어나 시각장애의 범주 안에서 또 다양한 범주의 시각장애가 존재하고, 시각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른 형태의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3.3.7 재판에서 저시력 시각장애를 가진 사건관계인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제공할 때 이들이 서류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큰 글자 확대인쇄물이나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화면 확대 프로그램이 장착된 컴퓨터, 확대경, 확대독서기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3.3.8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sup>31)</sup> 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sup>32)</sup> 장애인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sup>33)</sup>

30) 차성안, 장애인의 사법(司法)서비스 접근권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법원을 중심으로 p.239~240

31)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32) 「형사소송법」 제276조의2

3.3.9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sup>34)</sup>

### 법원에서의 장애 차별 금지 지침

① 법원은 재판에서 원·피고 또는 피고인·증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불리한 대우에는 장애인 원·피고 또는 피고인·증인에게 반말을 하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언어장애가 있는 증인의 말이 알아듣기 어렵다고 구술 대신 서면으로 대신하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② 법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판에서 전맹(全盲)인 사건관계인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제공할 때 이들이 서류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 전자파일,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사용을 위한 2차원 바코드 인쇄, 음성자료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③ 재판절차에서의 의사소통은 매우 복잡하고 사건관계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재판에서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조할 수화통역사 등 통역인은 법률 지식에 친숙하여 법률적 의사소통을 정확하고 보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④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33)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34) 「형사소송법」 제55조





- ⑤ 법원은 피고인이 농아자인 경우 또는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4. 행정 절차 및 서비스

### 1) 공문서 신청, 발급 및 열람 등 민원 처리

#### 직접차별

4.1.1 공공기관 등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관이 비장애인과는 달리 장애인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거부하거나 장애인에게 질 낮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행정 서비스 제공 조건으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 등은 모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소지가 크다.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민원인이 농지원부 등본의 교부를 신청했다. 민원담당자는 지적장애인의 어눌한 말투와 행동을 관찰한 후 비록 민원인이 농지원부에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서류의 성격상 민원인에게 직접 발급하기 곤란하니 농가주나 다른 세대원을 대동하고 오라고 요구했다. 이는 차별일 소지가 크다.

4.1.2 공공기관 등은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장애인시설에 대한 주민 등의 혐오를 이유로 시설의 건축이나 입주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에 소재한 특수학교가 노후된 학교건물을 개선하고자 관할 교육청에 신청허가를 받기 위해 이에 관해 환경부에 문의하자 환경부는 현 관련 고시규정을 들어 특수학교가 외지인구를 유발하는 시설이며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 입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지역주민 공공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당해 특수학교 재학생의 상당수가 특수학교와 동일한 주소지의 재활원에 거주하고 있고 대부분의 외부 통학생이 동 특별대책지역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동 특별대책지역내 일 반고등학교가 전국 소재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신입생으로 받아들임에도 관련 고시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공공복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당해 특수학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달리 보는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sup>35)</sup>

## 정당한 편의 제공

4.1.3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행정 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중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한 곳만을 장애인 1종 대형·특수 면허 기능시험장으로 지정·운영하여 당해 면허 기능시험을 보기 위해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달리 서울까지 와야 하는 불편, 시간적 손실, 경제적 부담 등을 겪고 있는바,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주요거점 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장애인 1종 대형·특수 면허 기능시험이 시행되도록 조치하거나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출장시험 제도를 운영하는 등 정당한 편의제공이 필요하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전국 주요거점 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장애인 1종 대형·특수 면허 기능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장애인용 대형·특수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그 구입 비용이 관리단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며, 또한 관리단은 당해 기능시험에 대한 장애인의 응시율이 낮아 시험장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유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 응시율이 낮아진 것은 오히려 서울까지 와서 시험을 봐야 하는 불편, 시간적·경제적 부담 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상기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바, 이에 관리단은 당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된다.<sup>36)</sup>

35) 국가인권위원회 2008. 12. 26.자 08진차469 결정

36) 국가인권위원회 2010. 8. 7자 10진정2457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결정의 근거를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7항 등으로 삼았으나, 운전면허시험은 국가의 행정서비스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서비스에서 정당한 편

4.1.4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행정 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을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하지만, 아직 그러한 서식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그 제작이 과도한 부담에 해당할 경우, 필요하다면 그에 대신해 장애인의 서식 작성을 보조할 대필자 등의 인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4.1.5 공공기관은 민원실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시설물에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을 저해하는 물리적 장벽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 기준<sup>37)</sup>에 맞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그 설치가 과도한 부담 등에 해당할 경우 그 대안으로서 장애인의 접근·이용을 보조하는 인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시설물의 접근·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은 장애인의 안전과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보조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이는 정당한 편의로 보기 어렵다. 모든 보조인력은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어떤 공공기관의 민원실 정문 앞에 설치된 경사로가 매우 급하여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를 이용할 수 없으나 이 급경사로를 개조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장애인에게 휠체어를 밀어서 그 급경사로를 통과하는 서비스를 정당한 편의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인적 편의는 장애인이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제공되도록 사전에 해당 인적 편의 제공 인력에 대해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의제공의무를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도 그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

37) '법적 기준'이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2조가 준용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의미한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 보조에 관한 사전 교육 항목<sup>38)</sup>**

- 휠체어의 구조에 대한 학습과, 휠체어의 이동 보조 시 휠체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학습이 필요
- 실습이 필요(단, 장애인을 휠체어에 태운 채로 들어서 옮기는 것은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수치심을 유발할 소지가 매우 크므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
- 장애인의 자립감 및 자존심 훼손 방지를 위해, 이동 보조는 반드시 해당 장애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도록 교육

4.1.6 공공기관이 장애인 개인에게 발급하거나 열람시킨 서류 또는 자료의 정보에 대해 해당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접근·이용하지 못하여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과도한 부담 등이 되지 않는 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가장 빠른 시간 또는 시일 내에<sup>39)</sup>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편의에는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의사소통 수단이 있다.

38) 최승철 외(2011),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인적편의제공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44쪽.

39)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에 근거한 것으로, 공공기관 등이 생산하여 배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용을 위하여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 기관이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경우와 다르다. 전자는 기관이 개인적 요청 또는 용도에 따라 제공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공이고 후자는 기관이 개인적 용도가 아닌 널리 배포할 용도로 생산하여 배포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공이다. 전자의 경우, 해당 정당한 편의는 현장에서 즉시 제공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시간 또는 시일을 요할 수도 있다. 이처럼 그 제공 시점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 때나 제공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가장 빠른 시간 또는 시일 내’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후자의 경우, 법은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민원인이 한 정부부처에 대해 우편으로 민원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 정부부처는 우편으로 민원 답변서를 회신했다.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로 인해 인쇄된 민원 답변서에 접근할 수 없자 정부부처에 전화를 걸어 답변서를 점자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부처는 민원 답변서의 점자화가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가장 빠른 시간 또는 시일 내에 점자화된 답변서를 제작하여 제공해야 한다. 만약 민원 답변서의 내용이 간략하여 구두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면 정부부처는 점자화된 답변서 대신에 전화로 구두 설명을 정당한 편의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민원 답변서의 내용이 길거나 복잡하여 민원인이 이를 숙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화 구두 설명으로는 시각장애인이 답변서의 정보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바, 이는 정당한 편의라 할 수 없다.

시각장애인 민원인이 구청에 제출용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았다. 이것의 용도는 타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해당 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등본의 점자화를 요청하더라도 구청이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등본을 타 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편의를 요청한다면 점자화 대신에 그 내용을 읽어주는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공문서 신청, 발급 및 열람 등 민원 처리에서의 장애 차별 금지 지침

- ① 행정기관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불리한 대우에는 행정 서비스 제공 거부, 잘 낮은 서비스 제공, 추가 서류 요구 등이 포함된다.
- ② 공공기관 등은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장애인시설에 대한 주민 등의 혐오를 이유로 시설의 건축이나 입주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 ③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행정 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



어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기관은 민원실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시설물에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을 저해하는 물리적 장벽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맞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그 설치가 과도한 부담 등에 해당할 경우 그 대안으로서 장애인의 접근·이용을 보조하는 인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들은 장애인의 안전과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보조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⑤ 공공기관이 장애인 개인에게 발급하거나 열람시킨 서류 또는 자료의 정보에 대해 해당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접근·이용하지 못하여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과도한 부담 등이 되지 않는 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가장 빠른 시간 또는 시일 내에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2)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접근성 제공

4.2.1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생산·배포한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해 장애인이 접근하는 데 필요한 각종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그 수단은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이다. 이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정부부처가 국제행사를 앞두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부로슈어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당해 정부부처에 대해 행사 홍보 부로슈어를 점자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부처는 이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부로슈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당해 점자화가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한 이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점자로 된 부로슈어를 제작하여 제공해야 한다. 만약 이 시각장애인이 당해 부로슈어의 내용에 효과적으로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점자화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에 정부부처는 당해 장애인이 선호한 점자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그 최종 선택권은 편의 제공자인 정부부처에 있다. 예를 들어 당해 시각장애인이 점자정보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단말기로 처리할 수 있는 부로슈어의 전자문서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점자화된 부로슈어를 제공하는 것만큼이나 장애인이 부로슈어의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며, 점자화된 부로슈어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적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부처는 점자화된 부로슈어 대신에 부로슈어의 전자문서 파일을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4.2.2 공공기관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거나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참여하거나 그 내용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 음성통역, 보청기기, 점자자료, 녹음테이프, 자막 서비스 등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행사에서 제공할 자료를 사전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은 행사에서 어떤 자료가 제공될지 알아야 해당 자료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어느 공공기관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식전 행사로 토론회와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하여 상영했으나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바람에 이 토론회에 참석한 청각장애인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공공기관은 이 행사에서 동영상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던바, 당해 청각장애인은 동영상의 접근에 필요한 자막 서비스나 수화통역사를 요청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공공기관 측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식전 행사로 동영상이 상영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거나 동영상에 자막을 삽입했어야 했다.





###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접근성 제공 지침

- ① 공공기관은 자신이 생산·배포한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해 장애인이 접근하는 데 필요한 각종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이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자신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거나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참여하거나 그 내용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수화통역, 점자자료 등 편의를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자신의 행사에서 제공할 자료를 사전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은 행사에서 어떤 자료가 제공될지 알아야 해당 자료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 5. 선거

### 1) 투표 사전 절차 (선거정보 접근, 선거인명부 열람 등)

#### 정당한 편의 제공

5.1.1 지방자치단체(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장소를 방문한 시각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명부를 열람하기 어려운 경우, 필요하다면 해당 장애인에게 대독자 등의 인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5.1.2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선거인명부에 장애인들이 접근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5.1.3 구·시·군의 장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등록장애인에게 부재자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부재자신고서를 발송해야 하는 경우, 필요하다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형 안내문을 보낼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기관이 생산·배포한 정보에 대해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로 인해 접근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 접근·이용에 필요한 수단을 해당 기관에 요청해야 하고, 해당 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부재자 신고 안내문의 경우, 주어진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때문에 이처럼 편의 제공 요청을 받고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는 절차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파악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보내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3조에서처럼 부재자 신고 안내문의 경우에도 사전 파악이 가능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형 신고 안내문을 보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5.1.4 구·시·군의 장은 장애인이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부재자신고서 등의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5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5.1.5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배포한 점자형 투표안내문의 정보에 대해 장애인이 점자를 읽지 못하여 보이스아이 안내문 등 다른 형태의 투표안내문을 요청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5.1.6 지적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비장애인용 선거 공보나 투표 안내문 등을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운바,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선거 공보나 안내문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만약 지적장애인이 그러한 별도의 선거 공보나 선거 안내문을 요구할 경우 과도한 부담이 아닌 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지적장애인이 선거를 앞두고 집으로 배달된 투표 안내문을 이해할 수 없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투표 안내문 제공을 요청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투표 안내문을 이해하기 쉽게 전면 새로 작성하고 인쇄하여 제공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과도한 부담 또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 판단하여, 투표 안내문의 주요 텍스트 부분만을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작성하고 프린터로 인쇄하여 이를 당해 장애인에게 제공했다. 이는 적절한 조치일 수 있다.

5.1.7 공직 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보를 작성할 때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자신 및 소속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기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 제공해야 한다.

5.1.8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등에서처럼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 각 행위의 주체들(후보자, 방송시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등)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폐쇄자막 또는 수화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5.1.9 공직선거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때 청각장애인 투표권자가 현장에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수화통역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5.1.10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은 장애인에게 자체 웹사이트 상의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관한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전달하기 위해 관련 국가표준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

### 투표 사전 절차(선거정보 접근, 선거인명부 열람 등)에서의 장애 차별 금지 지침

-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이 시각장애 등으로 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기 어려운 경우, 필요하다면 대독자 등의 인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선거인명부에 장애인들이 접근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 ③ 구·시·군의 장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등록장애인에게 부재자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부재자신고서를 발송해야 하는 경우, 필요하다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형 안내문을 보낼 필요가 있다.
- ④ 구·시·군의 장은 장애인이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부재자신고서 등의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5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배포한 점자형 투표안내문의 정보에 대해 장애인이 점자를 읽지 못하여 보이스아이 안내문 등 다른 형태의 투표안내문을 요청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 ⑥ 지적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비장애인용 선거 공보나 투표 안내문 등을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우나,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선거 공보나 안내문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 ⑦ 공직 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보를 작성할 때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자신 및 소속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기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 제공해야 한다.
- ⑧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등에서처럼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 각 행위의 주체들(후보자, 방송시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등)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폐쇄자막 또는 수화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 ⑨ 공직선거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때 청각장애인 투표권자가 현장에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수화통역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⑩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은 장애인에게 자체 웹사이트 상의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전달하기 위해 관련 국가표준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

## 2) 투표소 접근 및 이용

### 직접차별

5.2.1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등이 투표하려는 개인이 지적장애인이어서 제대로 투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다.

어떤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투표하려는 지적장애인의 말과 행동을 관찰한 후 당해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제대로 투표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했다. 만약 그 유권자의 지적장애가 아니었다면 투표관리관은 그에게 투표 제지라는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았을 것인바, 이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

5.2.2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등이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투표소 내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것은 위법하다.

투표관리관이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투표소로 들어가려고 하자 신성한 투표소에 개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투표소 안에서 투표 보조원이 대신 안내할 테니 안내견을 투표소 바깥에 묶어두고 혼자 들어가라고 했다. 이처럼 투표소 안에서 투표 보조원이 대신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더라도 안내견의 투표소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일 소지가 크다. 참고로, 투표관리관이 안내견이 아닌 애완견의 투표소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적법할 수 있다.

### 정당한 편의 제공

5.2.3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왕복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을 채택한 경우, 장애인의 차량 승하차를 보조할 인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왕복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과 이를 요청하기 위한 자격 및 절차를 사전 배포되는 투표 안내 책자 등을 통해 널리 공지할 필요가 있다.



5.2.4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저시력 장애인 등이 투표소를 찾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투표소를 알리는 안내문을 큰 글씨로 작성하고 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5.2.5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 내에서 장애인이 안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정당한 인적 편의 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 투표장 내에 장애인을 안내하는 안내판 등이 구비되어 있더라도 시각장애인 등은 이에 타인과 동등하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지 못할 소지가 있는바, 필요할 경우, 이들에게 안내를 위한 인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5.2.6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이 접근하여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소의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변경하거나 그러한 장애물이 없는 시설을 투표소로 정해야 하나 그것이 과도한 부담 등에 해당할 경우에 그 대안으로서 투표소에 대한 접근·이용을 보조하는 보조원을 제공할 수 있다.

투표소에 설치된 임시경사도가 폭이 좁아 전동휠체어가 통과할 수 없다면 그 임시경사로는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임시경사도가 나무 등으로 만들어져 휘청거리는 등 안전하지 않다면 이 또한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5.2.7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거나 안내하는 보조원의 업무가 단순한 것이라 하여 사전 교육 없이 이들을 당해 업무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이들이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거나 장애인을 안내할 때 장애인의 존엄성이나 자립심 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조 또는 안내를 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한 보조나 안내가 장애인의 존엄성이나 자립심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정당한 편의가 아닐 수 있다.

투표소에서 투표보조원이 수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밀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휠체어를 밀었고, 이로 인해 당해 장애인은 불쾌감을 느꼈다. 투표보조원이 장애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휠체어를 밀 행위는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지 아니 하며, 이것은 삼가야 할 행위다. 투표보조원은 장애인을 안내하거나 보조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받았어야 했다.

5.2.8 투표소에서 장애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할 때 필요할 경우 투표보조원 등은 이를 보조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선거인명부에 무인을 하고자 할 때 투표보조원은 시각장애인의 손을 선거인명부의 해당 위치로 안내해야 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5.2.9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 장애인의 기표를 보조하는 투표보조원이 장애인이 점자투표보조용구 등 선거용 보조기구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투표소에서 투표보조원 등이 점자투표보조용구 등이 비치된 사실이나 그 사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시각장애인이 투표하는 것을 제대로 보조하지 못했다면 이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일 소지가 있다.

5.2.9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 장애 유형을 고려한 기표방법 등 투표용 보조기구를 사전에 비치해야 한다. 여러 장애 유형을 고려한 투표용 보조기구를 사전에 충분히 비치하지 않을 경우, 그 고려되지 못한 장애를 가진 개인은 투표를 하지 못하거나 비밀투표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한 시각장애인이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으나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기구가 준비되지 않아 결국 진행요원의 도움으로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 투표 보조기구라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당해 장애인의 비밀투표의 권리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5.2.10 「공직선거법」에 의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투표소에서 시각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기표를 보조할 가족 1인을 동반하여 기표소에 들어가려고 할 때 투표관리관이 비밀투표를 이유로 그 동반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참고로, 선거인이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를 동반하고 투표소에 들어가는 것은 법으로 허용된다.

### 투표소 접근 및 이용에서의 장애 차별 금지 지침

- ①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등이 투표하려는 개인이 지적장애인이어서 제대로 투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다.
- ②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등이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투표소 내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것은 차별이다.
-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왕복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을 채택한 경우, 장애인의 차량 승하차를 보조할 인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저시력 장애인 등이 투표소를 찾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투표소를 알리는 안내문을 큰 글씨로 작성하고 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 내에서 장애인이 안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정당한 인적 편의 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 투표장 내에 장애인을 안내하는 안내판 등이 구비되어 있더라도 시각장애인 등은 이에 타인과 동등하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지 못할 소지가 있는바, 필요할 경우, 이들에게 안내를 위한 인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⑥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이 접근하여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소의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변경하거나 그러한 장애물이 없는 시설을 투표소로 정해야 하

나 그것이 과도한 부담 등에 해당할 경우에 그 대안으로서 투표소에 대한 접근·이용을 보조하는 보조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⑦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거나 안내하는 보조원의 업무가 단순한 것이라 하여 사전 교육 없이 이들을 당해 업무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이들이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거나 장애인을 안내할 때 장애인의 존엄성이나 자립심 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조 또는 안내를 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⑧ 투표소에서 장애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할 때 필요할 경우 투표보조원 등은 이를 보조해야 한다.

⑨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 장애 유형을 고려한 기표방법 등 투표용 보조기구를 사전에 비치해야 한다. 여러 장애 유형을 고려한 투표용 보조기구를 사전에 충분히 비치하지 않을 경우, 그 고려되지 못한 장애를 가진 개인은 투표를 하지 못하거나 비밀투표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⑩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3) 후보 등록, 선거운동 등 피선거권

#### 정당한 편의 제공

5.3.1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등의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5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제



공을 거부할 수 없다.

5.3.2 장애인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들이 함께 또는 각자 참여하는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 방송연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등에 참여할 때 해당 방송시설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장애인 후보자의 물리적 접근성을 위한 편의시설 또는 인적 편의, 장애인 후보자의 장애로 인한 정견 전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화통역, 장애로 인해 정견 발표 시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 이에 대한 허용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자체 주관하는 후보자 정책토론회의 장소를 경사면 등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대학교 강당 무대로 정하는 바람에 휠체어 사용 후보자가 많은 청중들 앞에서 선거토론위원회 관계자들이 휠체어 째로 무대 위로 들어 올려 졌다면, 이러한 인적 서비스는 정당한 편의가 아니다. 이는 당해 후보자가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비독립적인 개인이라는 인상을 유권자에게 심어줄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리고 후보자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결코 행해서는 안 될 조치다. 이 경우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장애인 후보자의 접근성은 물론 청중 중에 장애인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장애인 청중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정책토론회의 장소를 정해야 한다. 상기 사례에서 위원회가 경사가 완만한 간이 경사로를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후보자가 자력으로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면 이는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

### 후보 등록, 선거운동 등 피선거권에서의 장애 차별 금지 지침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등의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장애인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들이 함께 또는 각자 참여하는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 방송연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등에 참여할 때 해당 방송시설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장애인 후보자의 물리적 접근성을 위한 편의시설 또는 인적 편의, 장애인 후보자의 장애로 인한 정견 전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화통역, 장애로 인해 정견 발표 시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 이에 대한 허용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사법·행정·선거에서의 장애 차별 예방 매뉴얼

발행일 : 2012년 12월

발행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전화 : 02-3433-0600 fax) 02-416-9567

홈페이지 : <http://www.koddi.or.kr>

인쇄처 : 리드릭(02-2269-1919)

ISBN 978-89-94262-04-8 93330